

예산총칙

2022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796,200,000	23,886,000
일반회계	720,000,000	21,600,000
특별회계	76,200,000	2,286,000
공기업특별회계	59,300,000	1,779,000
수도사업특별회계	37,500,000	1,125,00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1,800,000	654,000
기타특별회계	16,900,000	507,000
수질개선특별회계	5,149,000	154,47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950,000	88,500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특별회계	210,000	6,30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406,000	12,180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250,000	7,500
치수사업특별회계	660,000	19,800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475,000	14,250
주차장특별회계	6,800,000	204,00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2021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730,5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20,2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의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